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4.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행정동 통합이후 관할구역과 인구증가등으로 현 동청사가 협소하여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명실공히 행정과 지역주민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관련 부지를 매입코자 함.
- 외국인 투자지역 도넨제너럴석유(**Exxon Mobil** 회사)의 입주로 고도기술수반 및 첨단 기술의 국내 도입에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상모사곡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 대상토지 : 구미시 사곡동 588번지외 3필
- 면 적 : 3,410m²
- 예정가격 : 1,130,140천원(가감정가 기준)

□ 구미시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 위 치 : 구미 4국가산업단지 3B
- 면 적 : 28,627.75m²(229,022m²중 12.5%)
- 매입방법 : 229,022m²중 12.5%인 28,627.75m²(산자부75%, 경북도12.5%)
- 매입가격 : 4,618,492천원(총금액 36,947,931천원의 12.5%)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m²)

[illegible]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m²)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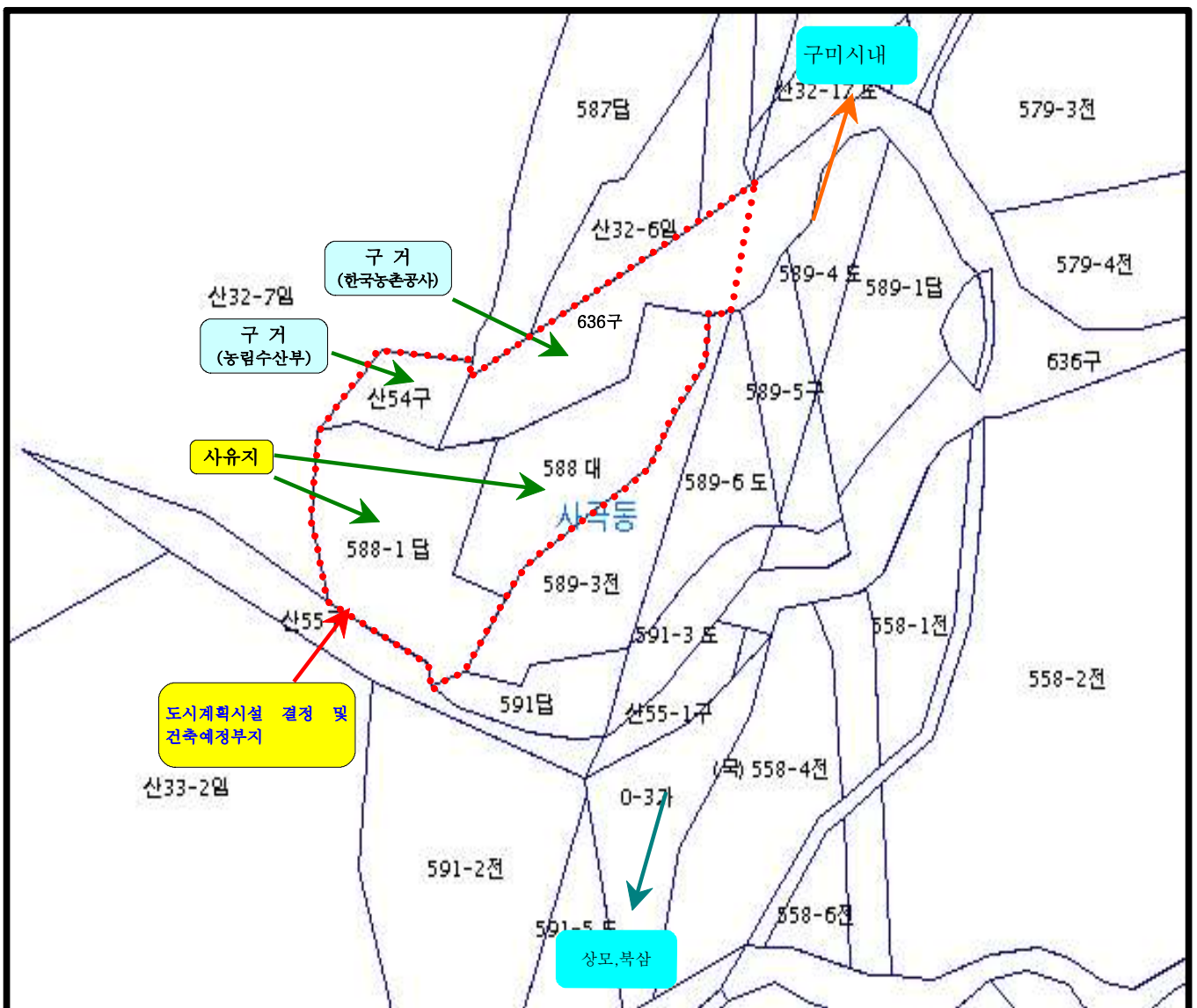
취득대상토지

□ 재산의 표시 : 상모사곡동청사 신축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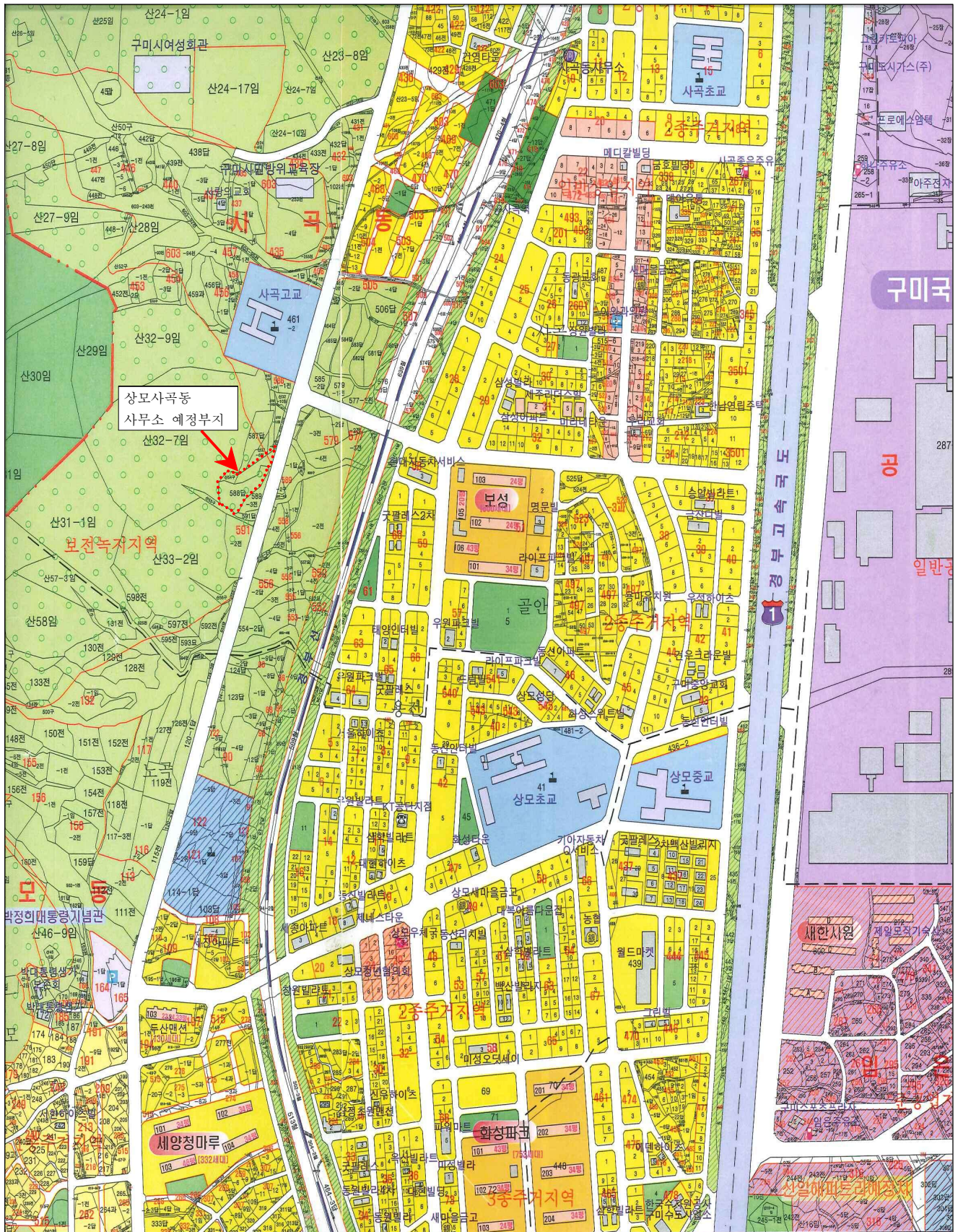
○ 소재지 : 구미시 사곡동 588번지 외 3필지

○ 지목 및 면적 : 대지, 답, 구거(3,410m²)

□ 지적도



□ 위치도



□ 현황전경도



취득대상 토지

☐ 재산의 표시 : 4국가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 소재지 : 4국가산업단지 3B

○ 지 목 : 산업시설 공장용지

○ 면 적 : 28,627.75m²(229,022m²의 12.5%)

□ 위치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

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